

경국제세의 의의

수필가 최규자

031)706-3160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조의 기본법전으로서 통치체제의 근원적 특징을 담고있는 책이다. 조선조 건국후에 새 왕조를 통치해나갈 법령의 제정 및 그 준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1397년 곧 태조6년에 조준(趙俊)에 의하여 최초로 정리 편찬된 것이 바로 《경제육전(經濟六典)》이었다.

그러나 조선조의 통치질서는 오히려 이 《경제육전》이 성립된 이후인 15세기 전반기, 즉 태종과 세종 때에 그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그후 15세기 후반기인 세조와 성종 때에는 그것을 집대성하여 왕조의 기본적인 지배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이 치국법전(治國法典)으로서 《경국대전》 편찬의 배경이었다.

경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대전(大典)이란 글자 그대로 중요한 법전(法典)을 의미한다. 제세(濟世)는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고, 안민(安民)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세안민, 혹은 경국제세 곧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국대전은 나라를 경륜(經綸)하는 국가차

원의 소중한하고 큰 법전을 지칭한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편찬이 논의된 것은 세조가 즉위한 직후부터였다고 한다. 세조 자신이 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가하여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최항(崔恒)을 총책임자로하여 한계희(韓繼禧)·김국광(金國光)·강희맹(姜希孟) 등으로 하여금 편찬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1460년, 즉 세조6년에 호전(戶典)이 제일 먼저 완성되어 반행(頒行)되었고, 이듬해에는 형전(刑典)의 반행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 나머지 법전에 대한 편찬과 심의가 계속되었으나, 세조의 재위동안에는 아깝게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1469, 예종원년에 완성되어 동왕 2년 1470년부터 준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종이 《경국대전》의 시행을 보지 못하고 죽게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은 곧 그 개수작업에 착수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으로 하여금 그 수정(修訂)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의 수정을 거쳐 마침

내 1471년, 성종2년 1월1일부터 준용(準用)하게 되었다. 편찬이 착수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체적인 준행을 보게된 《경국대전》이지만 실제로 준용하는 마당에서는 미비하거나 누락된 점이 예상외로 많았다. 그리하여 1471년부터 1473년까지 다시 교정청을 두어 누락(漏落)되었던 130여조의 수교(受敎)를 뽑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이후에도 성종15년(1484)까지 한번 더 본격적인 수정과 심의과정을 거쳐 성종16년(1485)에 최종적으로 반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서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오늘날 전해진 《경국대전》은 모두 2책이다.

《경국대전》의 내용구성은 《경제육전》과 같이 모든 법률 조건을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개 부문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전(吏典)으로 조선왕조의 제반행정조직 일반과 관리에 관한 문제를 규정한 부문이다.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경관직(京官職)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은 대개 왕실관계 법규와 중앙행정관서 및 지방행정관서에 관한 법규와 관리의 임면(任免)과 포폄(褒貶)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호전(戶典)이다. 국가의 재정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호적·양전(量田) 등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규정과 기본적 세

원(稅源)인 백성과 토지를 파악하는 호적 및 토지문제에 관한 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성을 파악하는 기본법령은 3년에 걸친 1회의 호적조사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는 법규는 20년에 1회씩 토지를 측량하여 그 대장을 새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셋째로 예전(禮典)인데, 유교국가인 조선왕조의 각종 의식절차와 외국과의 교섭과 의전절차 및 과거(科擧)에 관한 규정 등을 수록(收錄)한 것이다. 제과(制科)·의장(儀章)·생도(生徒) 등 모두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각급 신분의 고신식(告身式) 및 홍패식(紅牌式)·호구식(戶口式) 등 25종의 식례(式例)를 들고 있다.

넷째로 병전(兵典)이다. 군사·통신·교통에 관한 규정을 수록한 법전으로서 경관직(京官職)·외관직(外官職)·토관직(土官職) 등 모두 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은 무관직의 관제와 군인의 선발·복무·급료에 관한 규정, 그리고 무기와 성곽·병선·군마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한편 조선조 때에는 교통행정과 통신행정도 병조의 소관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병전에서 역체제(驛遞制)와 봉수제(烽燧制)에 관한 규정도 같이 실고 있다.

다섯째로 형전(刑典)으로 각종 형사법규와 죄인으로서의 노비(奴婢)관계법규가 실려져 있다. 용률(用律)·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 등 28개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특별 법으로서 적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도 보충법적인 것은 명률(明律)을 적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명률은 대명률(大明律)이라 하여 중국 명나라의 형법책을 말한다. 법전에 실려있는 법령 가운데서 형법에 속하는 것으로는 모두 14개조를 지적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상의 주요 대상으로는 토지와 노비였다. 또한 형법은 범법자에게만 한하여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친족과 동료관원 등에 연좌(連坐)되었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것은 사회신분에 따라서 법률의 적용에 신축성있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공전(工典)으로 기술과 노동력에 관한 규제와 그리고 토목공사 일반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로(橋勞)·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공전에는 정부에 기술노동자원으로 등록되어있던 각종 기술자, 즉 경공장(京工匠)의 종류와 그 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당시의 수공업(手工業)사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사적자료가 되고 있다.

《경국대전》의 특징은 이 법전의 기초자료가 된 《경국육전》이 고려 말기의 교지와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법전을 대표하는 소위 만세 불변지법(萬世不變之法)이었다는 점이다. 또 그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법률사상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조를 통하여 여러번 거듭간행되었는데, 이와같은 《경국대전》이 내포하고 있는 법사상적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특히 들 수 있다.

첫째,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사회조직 및 가족주의의 확립과 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충효사상이 바탕으로 된 점이다.

둘째,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근간으로하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전통적인 신분체제를 유지하며 강화하여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 점이다.

셋째, 재산법상으로는, 토지와 가옥 및 노비 등의 사유제를 전제로 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또 재산상속법에 있어서는 장자의 독점을 불허하고 평균상속을 원칙으로 하며, 남녀 무차별주의를 채택하였다.

넷째, 권력분립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인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에 있어서도 왕실과 정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과 같이 시대적인 제약성이 뚜렷하였다.

